

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

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결정으로 사업주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금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7. 29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



- 1. 건 명: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 공시송달
- 2. 근 거: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, 행정절차법 제14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 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 불능사유	주소
			처분 사유	처분내용		
비바세컨드 (차*광)	68*-34-008**	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서	허위근로 및 페이백 등으로 보조금 51,300,000원 부정수급	제재부가금 252,500,000원 부과, 보조금 지급 제한 5년	폐문부재	인천 서해구 느티로/ 인천 서해구 송학로 (이하 생략)

- 4. 공고 기간: 2026. 7. 29. ~ 2026. 8. 13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박수연(☎053-667-675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